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가동개시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관할기관장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변경허가 대상 신규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 등 허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먼지	24시간 평균치 3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150 $\mu\text{g}/\text{m}^3$ 이하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8.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3 제2호의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로 한다.”를 “정량한계값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6 제5호의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를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7 제1호에 표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별표15 제3호나목3)의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를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통합허가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직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를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통합허가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를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통합허가 담당부서)”

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를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통합허가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를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통합허가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3쪽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통합허가 담당부서)”를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통합허가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직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서명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의질 목표수준 관련 유효기간)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오염도 측정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략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신설>	제11조(오염도 측정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략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8.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락처	(044) 201-7071